#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67 |
|---|---|

제 출 일 : 2026. 10. 2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○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

○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(안 제3조제2항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제3항, 제4조제2호)

○ 서면심의 근거 신설(안 제6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○ 부서협의결과

1) 협의기간 : 2026. 8. 5. ~ 2026. 8. 10.

2) 협의결과

- 비용추계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입법예고 결과

1) 예고기간 : 2026. 8. 13. ~ 2026. 9. 2.(20일간)

2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#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과장”을 “과장급 이상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와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관·과 | | 토지정보과 |
|---|---|---|
| 입안자 | 관·과장<br>직위·성명 | 토지정보과장<br>진 상 범 |
| | 팀장<br>직위·성명 | 토지민원1팀장<br>김 동 겸 |
| | 담 당 자<br>성명·전화 | 유 설 화<br>(031-590-4532) |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|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 | ② ---------- 과장급 이상 공무원-----. |
|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| ③ -------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④·⑤ (생 략) | ④·⑤ 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| 제4조(해촉) ---------- 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| 2. ---------- 경우 |
| 3.·4. (생 략) | 3.·4.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 | 제6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와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다. |

**붙임1**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「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,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 4. 작성자

- 도시국 토지정보과장 진상범

##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

남양주

# 남 양 주 시

수신 토지정보과장
(경유)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6A경기남양043)

1. 토지정보과-15272(2026. 8. 10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(2026A경기남양043) 1부. 끝.

여성아동과장 [illegible].

주무관 박미연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6. 8. 10. 홍주희
협조자
시행 여성아동과-23800 (2026. 8. 10.) 접수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양주시청 별관 4층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 031-590-3965 팩스번호 031-590-2269 / ibicf726@korea.kr / 비공개(5)

#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<table>
<tr><td>관리번호</td><td colspan="4">2026A경기남양043</td></tr>
<tr><td>정 책 명</td><td colspan="4">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소관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경기도 남양주시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토지정보과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이정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31-590-4532</td></tr>
<tr><td>성별영향평가서<br>제출날짜</td><td colspan="4">2026년 8월 10일</td></tr>
<tr><td>주요<br>성별영향평가<br>내용<br>(토지정보과)</td><td colspan="4">○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부위원장 조정(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)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,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심사의 근거 마련 도모<br>-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(안 제3조제2항)<br>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제3항, 제4조제2호)<br>- 서면심의 근거 신설(안 제6조제4항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종합 검토 의견<br>(성별영향평가책임관)</td><td colspan="4">■ 개선사항 없음 □ 자체개선안 동의 □ 개선의견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'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</td></tr>
<tr><td>검토의견<br>반영계획서</td><td colspan="4">해당 없음</td></tr>
</table>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6년 08월 10일

**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**

(담당자/연락번호 : 박미연/031-590-3965)

**토지정보과장** 귀하

##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

# 남 양 주 시

수신 토지정보과장
(경유)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(2026-41)[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]

토지정보과-14986(2026. 8. 4.)호와 관련하여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○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○ 평 가 결 과 : **원안동의**

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. 끝.

감 사 관 직무대리 박호영

| 주무관 | 송호림 | 청렴윤리팀장 | 이정주 | 기술감사팀장 | 대결 2026. 8. 5. 홍성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8836 (2026. 8. 5.) 접수 토지정보과-15000 (2026. 8. 5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신관 3층 감사관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 031-590-4719 팩스번호 031-590-2079 / rims@korea.kr / 비공개(5)

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관 리 번 호 | 2026-남양주-41 | | |
| 자치법규명 |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| | |
| 평 가<br>담 당 부 서 | 감사관 | 평가담당자<br>직급 및 성명 | 행정7급 송호림 |
| 입 안 부 서 | 토지정보과 | 입안담당자<br>직급 및 성명 | 행정7급 이정 |
| 평 가 결 과<br>통 지 일 | 2026. 8. 5. | | |
| 통 보 내 역 | **원 안 동 의** | | |

| 관 련 조 문 | 검 토 결 과 | 조 치 사 항 |
|---|---|---|
| - | - | - |

2026년 8월 5일

**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**

(담당자 / 연락처 : 송호림 / 031-590-4719)

토지정보과장 귀하

## 붙임4 규제심사 결과

# 남 양 주 시

수신 토지정보과장
(경유)
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(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)

1. 토지정보과-14986(2026. 8. 4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**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(안)**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해당 개정안은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면 심의·의결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,

3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**행정규제*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**, 「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」에 따른 **규제심사 대상이 아님**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* (행정규제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(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)

끝.

의 회 법 무 과 장

주무관 김보나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6. 8. 5. 이봉규
협조자
시행 의회법무과-9375 (2026. 8. 5.) 접수 토지정보과-15025 (2026. 8. 5.)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 031-590-7320 팩스번호 031-590-2900 / a02496@korea.kr / 비공개(5)

## 붙임5 입법예고 결과

# 남 양 주 시

시민주권 MDI 남양주 대전환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[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1. 토지정보과-15546(2026.08.1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입법예고 제명 : 「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08. 13.(목) ~ 2026. 09. 02.(수) / 20일간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라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 / 의견제출 0건
마. 향후 추진계획 : 제520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| 주무관 | 유설화 | 토지민원1팀장 | 김동경 | 토지정보과장 | 진상범 | 도시국장 | 전결 2026. 9. 4. 임선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
협조자 의회법무담당 김상협 의회법무과장 이봉규

시행 토지정보과-17188 접수

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22, 토지정보과 (다산동) / http://www.nyj.go.kr

전화번호 031-590-4532 팩스번호 031-590-2641 / yoo0323@korea.kr / 대국민 공개